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Origin for Preparing the Origin Verification Of Export Companies

배명렬(Myong-Ryeol Bae)
경기대학교 교수

목 차

I. 서론	V. 결론
II.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III. FTA원산지검증 현황 및 사례연구	ABSTRACT
IV. 원산지관리전략에 대한 시사점	

국문초록

한·EU FTA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FTA, 원산지, 원산지검증, 수출기업

I. 서론

2016년 7월 15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양자 간 무역협정인 자유무역협정은 15건 52개국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경제영토(전세계의 약 74.6% 점유)를 보유하게 되어 칠레와 처음으로 FTA가 발효된 지 불과 12년 만에 괄목할만한 시장 확대를 이루어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FTA체결국가와의 교역량은 3,749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71.2%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 이제는 FTA체결국을 제외한 무역은 우리나라 전체교역량의 불과 28.9%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역수지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전체 무역흑자의 335.7%의 흑자를 내고 있어 FTA체결국과의 교역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FTA활용률도 FTA 체결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출은 71.3%, 수입은 68.2%를 나타내어,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2.1%p, 수입은 0.2%p 증가하였으며, 수출부문에서 FTA 활용이 수입부문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FTA 활용률이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무역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중국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관세청 자료²⁾에 따르면 2012년 515건에 달하던 원산지에 대한 간접검증 건수가 2014년에는 2,892건으로 462%가 증가하였으며, EU측의 간접검증 현황은 2012년 460건에서 2014년에 2,822건으로 513%가 증가하였으며, 2012년 3월에 협정이 발효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한국의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측이 직접 확인하는 직접검증 현황도 2012년 69건에서 2014년 482건으로 600% 가까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들이 원산지검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상대국 행정당국의 불신을 초래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 세계경기 회복의 둔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 하에서 각국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1) 송경은, “FTA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현황”, 『FTA TRADE FOCUS』Vol.11, 국제원산지정보원, 2015. p120

2)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2015. 12. 28

확산시키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³⁾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 또한 수출업체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이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고 있으며⁴⁾, 외국의 사례에서도 원산지증명의 발급으로 대변되는 FTA활용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따라서 FTA시대의 수출기업은 원산지검증에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만큼 원산지관리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현황을 살펴보고 체결상대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고찰

1. FTA 원산지검증제도의 내용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수입국에서 FTA 특혜대상 물품이고 해당 FTA 원산지규정 즉 원산지기준 및 직접 운송요건을 충족하고 동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검증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체결되는 협정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협정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⁶⁾

원산지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즉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를 방지하고 관세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3)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IIT TRADE FOCUS』 제36호, 한국무역협회, 2016, p17

4) 이지수,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p.104

5) Harris, J. & Staples, B. R., “Origin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disaster or trade facility opportunity?”,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pp.1-12.

6) 이명구, “FTA 해외수출입통관 애로사례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 제179호, 한국관세사회, 2016. p.60.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검증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5개 협정별로 상이(<표 1>참조)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원산지검증의 수행방식은 수입신고 수리 후 검증원칙과 서면검증 우선 원칙, 체약국내 수입자 검증 우선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의 기본이 되는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 직접운송 관련서류 구비 등의 형식적인 요건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심사하며 통관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서면검증 우선원칙은 실제 물품의 생산과정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제반 서류를 통한 서면검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면검증에 실패하는 경우 현지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수출자, 생산자보다 수입자를 우선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검증 결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원산지검증방식은 검증대상에 따라 수출검증과 수입검증, 검증수행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 간접검증, 혼합검증으로 구분되며, 검증방법에 따라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별 원산지 검증방법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직접검증방식으로는 아메리카지역의 미국(섬유, 의류는 간접/공동 검증이 가능), 칠레, 캐나다 및 호주(간접검증병행), 뉴질랜드,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싱가포르 등 6개 FTA가 이에 해당한다. 간접검증방식은 유럽지역의 EU, EFTA, 터키 등 3개의 FTA가 해당하며, 선간접검증·후직접검증 방식으로는 아시아지역의 ASEAN, 인도, 중국, 베트남 등 4건의 FTA가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간접검증·직접검증 중 택일 방식은 남미의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 등 2건의 FTA가 이에 해당한다. 각 FTA협정별 원산지사후검증 방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협정별 원산지사후검증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간접	직접		간접	직접
발효일자	2004.4.1	2006.3.1	2006.9.1	2007.6.1	2010.1.1		2011.7.1	2011.8.1	
검증방식	직접		간접	선간접·후직접			간접	간접/직접	
서면검증									
회신기한	30일		10개월	2개월	3개월	30일	10개월	150일	90일
연장신청	1회, 30일 이내		-	-	-	-	-	-	-
완료기한	-	-	-	6개월 이내 간접검증 완료					
현지검증									
서면통보	서면통보		없음	서면통보			없음	서면통보	
서면동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연장기간	1회, 60일 이내			연장포함 60일 이내 / 합의기간 내				-	
완료기한	-			최대 6개월 이내 현지검증 완료 ¹⁾				1년 이내 결과 통지	

구분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일반	섬유							
발효일자	2012.3.15		2013.5.1	2014.12.12	2015.1.1	2015.12.20	2015.12.20	2015.12.20	2016.7.15
검증방식	직접	간접	간접	직접(간접병행)	직접	선간접·후직접		직접	직접/간접
서면검증									
회신기한	-	-	10개월	30일	-	6개월		90일	30일/150일
연장신청	-	-	-	30일 이내	-	-	-	-	-
완료기한	-	-	-	-	-	3개월내 ¹⁾ 간접검증완료	10개월내 간접검증완료		
현지검증									
서면통보	서면 통보		없음	서면 통보					
서면동의	서면 동의			서면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신청	-			-	15일 이내	현지검증 동의시	15일 이내	-	15일 이내
연장기간	-			-	1회, 60일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²⁾	-	60일 이내
완료기한	-			-	-	최대 6개월 이내 현지검증 완료		1년 이내 검증결과 통보	-

* 주 : 1) 결과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연장 포함 60일 이내 또는 양국 합의기간 내
 * 자료 : 15개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

2. FTA 원산지검증에 관한 선행연구

FTA에서 특혜 협정관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으나 원산지검증에 대한 연구와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근호·정재완(2012)은 유럽연합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간접검증체제에서의 분쟁사례와 판결원칙을 분석, 즉 구체적인 사후검증방식, 관할당국과 수출입자의 과실, 원산지 결정권한, 입증책임, 정당한 신뢰보호, 불가항력 등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희열·곽근재(2012)는 NAFTA 발효 이후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고 유형별 쟁점사항과 관련규정을 분석하여 한·미 FTA의 원산지검증에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박홍규(2014)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중심으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불복 및 검증과 관련된 사례를 절차적 검증보다는 실제적 검증과 관련하여 HS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한 분석을 통하여 공통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 업계, 학계의 입장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중용·이춘수(2015)는 한·미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직·간접 검증방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원산지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재완(2015)은 협정관세 적용의 배제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행정심판 결정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당국이 주도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증과 협정상대국 관세행정 당국이 주도하는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양식·이병락(2015)은 원산지증명의 사후검증의 배경 및 동기를 합리적 의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창봉·임덕환(2014)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Antoni & Kati(2005)는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운영하는데 원산지규정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혜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고, 복잡한 원산지규정은 국가 간 협력으로 투명한 원산지규정을 제정하여 단순하게 적용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재열(2010)은 다수의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FTA활용은 물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지적하며,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업의 원산지증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철구·최장우(2013)는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과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대해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의 FTA에 대한 이해도, 기업 간의 협력정도,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지원정도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 및 원산지정보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문인력 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 정부 지원제도의 강화, 민간컨설팅시장 육성의 필요성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창범(2015)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실무적 역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파일럿 스터디를 통해 생산공정 이해능력, 수출품의 HS 품목분류 능력, 원가회계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능력, 사후검증 대비능력을 도출하고 이들 실무역량과 기업의 원산지검증 성과간의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역량이 원산지검증 성과에 대해 정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III. FTA 원산지검증 현황 및 사례연구

1.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

1) FTA협정국별 수출물품 검증현황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원산지검증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 검증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한·ASEAN FTA의 발효, 2011년 7월 한·EU FTA의 발효, 그리고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원산지검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

였다. 실제로 관세청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잇따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⁷⁾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현황을 협정별로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가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U는 2015년에는 검증요청이 무작위(Random)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인증수출자 유효성,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한 검증요청이 이루어졌다. 독일, 슬로바키아, 영국을 중심으로 검증요청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불충족, 인증수출자번호 위반 사례가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2016년에는 전체적인 비중은 줄어들었어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원산지검증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표 2>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추이

(단위 : 검증완료 업체수 비율, %)

구분	2012~14년 평균	2015년 상반기	2015년	2013~14년 평균	2016년 상반기
EFTA	3.6	0.7	1.4	21.3	1.4
아세안	13.4	7.5	6.1	20.4	12.2
인도	-	-	-	14.3	4.1
EU	80.5	89.0	80.3	9.6	64.9
미국	1.8	1.4	4.4	4.6	-
터키	-	-	7.5	3.9	4.1
중국	-	-	-	4.8	13.6(APTA포함)
기타	0.7	1.4	0.3	21.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 Origin Verification Brief 각호⁸⁾

2016년 들어 눈에 띄는 현상은 중국과의 FTA가 발효 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FTA 뿐만 아니라 APTA⁹⁾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충족이 미흡한 경우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7) 관세청, “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보도자료, 2015. 12. 28.

8)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Brief」 각호 근거로 필자가 정리

9)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1976년 ‘방콕협정’으로 발효되었으나 회원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2006년 9월 1일에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으로 개정되어 발효. 당초 인도,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가 회원국이었으나 2002년 중국이 참여.

는 기관발급방식이지만 중국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잇달아 검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시에 중국 측에서 우리의 HS 품목분류를 부인하고 비특혜 세번으로 분류하거나 우리 측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특혜를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국해관에 사전 품목분류를 신청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불인정 등 FTA 협정과 실제 해관의 통관절차가 상이한 경우도 있어 중국 측 수입자를 통한 특혜적용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¹⁰⁾ 그리고 최근 들어 제3국 소재 기업이 국내기업의 인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증자격이 없는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발행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 품목별 수출물품 검증현황

FTA 협정 상대국에 따라 특정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일례로 미국은 섬유, 전기전자, 기계, 차량부품, 식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¹¹⁾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사품목 및 기업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²⁾

〈표 3〉 품목별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 비율 추이

(단위 : 검증완료 업체수 비율, %)

구분	2012~14년 평균	2015년 상반기	2015년	2013~14년 평균	2016년 상반기
전기전자	21.4	10.1	19.5	21.3	25.9
섬유직물	17.3	27.5	18.9	20.4	19.0
기계류	12.7	16.4	14.3	14.3	20.7
석유화학	10.0	5.8	9.3	9.6	12.1
자동차부품	7.0	4.8	6.5	4.6	3.4
플라스틱	6.3	3.2	5.5	3.9	12.1
철강금속	4.2	10.6	1.4	4.8	6.9
기타	21.1	21.7	24.6	21.1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원 : Origin Verification Brief 각호¹³⁾

10)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Brief」 2016-1호, 2016, p3.

11)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해외통관예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 분석」, 연구보고서 14-08, 2014, pp.101

12)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Brief」 2015-2호, 2015, p2.

13) 관세청, 「Origin Verification Brief」 각호 근거로 필자가 정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EU, 미국 등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 요청이 늘어났으며,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요청이 집중되었다. 특히 섬유·직물제품은 미국, 터키에서 원산지검증 요청이 자주 일어났다.

2016년에 들어서도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의심에 따른 요청 뿐 아니라 무작위 선별에 의한 검증요청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검증 사례연구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국가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체결상대국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상에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심사항을 발견하거나 또는 FTA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상황적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질문에 회신한 109개 회원국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입통관 시 서류심사에 관한 질문에서 고위험 선적(high risk shipment) 심사가 50%, 무작위 심사가 47%, 전수심사가 38%, 기타 35%로 나타났으며, 서류심사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협정관세 특혜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적서류를 심사한다고 응답하여 직송운송원칙의 준수를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류심사를 위한 체크 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원산지증명을 심사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는 스탬프가 90%, 서명이 86%, 내용의 일관성이 88%, 기타가 46%로 나타났다. 원산지검증의 동기를 묻는 질문은 원산지증명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84%, 원산지 증명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89%, 무작위 검증이 46%,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산지검증을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통관 후에만 실시하는 경우가 40%, 통관 전 또는 후로 응답한 국가는 39%, 통관 전에만 실시하는 국가도 20%에 달했다.¹⁴⁾

본 연구에서 사례분석은 스탬프, 서명, 원산지 증명 서류의 일관성 등 형식적인 요건의 불충족에 의한 검증과 원산지증명의 진정성, 원산지 증명 내용의 정확성 등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미충족에 의한 합리적 의심으로 실시된 검증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요건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일관성이 없거나 스탬프, 서명 등이 상이해서 검증

14) Atsushi Tanak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No.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pp.7-11. 비중의 합계가 100% 초과하는 것은 중복답변을 허용한 결과임.

이 시작된 사례들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 요건은 FTA 특혜적용의 전제조건인 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요건¹⁵⁾ 등 원산지증명의 진정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절차적 요건은 증빙의 발급 및 증빙자료의 보관 등 행정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1) 원산지 증명서류의 형식상의 요건에 의한 원산지검증 사례

(1)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수출자 주소, 중량, 금액 차이 사례¹⁶⁾

H사는 Eye Make up 등 화장품(HS 3304.20)을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면서 MFN 관세율 8%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0%세율(CTH or RVC 40%)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아세안세관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수출자 주소가 다르고 중량,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의심이 간다며 원산지검증을 한국세관에 요청하였다. 한국세관에서 검증한 결과 첫째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에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된 진본임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영문주소가 다른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상세한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빌딩명과 층수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영문표기 방식에 있어서는 같은 주소인데도 영문의 알파벳 표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셋째 중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 수출자가 총 중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송품장은 소수점 2자리까지 원산지증명서에서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사하여 기재하여 발생한 차이였음이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의 신고오류항목을 보정한 후에 상대국에 회신하였다.

본 사례는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이 실시된 사례이다.

(2) 비인증품목과 혼재된 원산지신고서 사례¹⁷⁾

H사는 완성차 제조에 사용되는 전동저감 장치, 배기가스 정화장치, 소음저감 장치 등이 결합된 다양한 차종의 차량용 Muffler를 제조하여 국내외 완성차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그런 중에 슬로바키아 현지법인에서 슬로바키아세관이 원산지신고서에 총 7개의 품목별 인증번호가 삽입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 원산지검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입수하였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로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담당자의 실수로 수출한 물품

15)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 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청람, 서울, 2016, pp.210-221.

16)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대한상의 원산지검증 실무 연수자료, 2016. 9. 26.

17) 관세청, 「2014 FTA 생생스토리」, 관세청, 2015, pp.174-179

중 장비 TOOL(8515.90)류가 비인증품목임에도 인증 받은 물품과 혼재되어 8708.92로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H사는 슬로바키아 현지법인과 지속적으로 HS코드 정합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세분화된 HS코드(6개 품목)로 추가인증을 획득하였다. 동시에 해외법인에 비인증품목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청하였고, 아울러 기발행된 원산지신고서 관련 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재검토하는 등 업체별 인증수출자 획득 및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결국 원산지 검증 사전준비로 인증 받은 품목은 원산지관리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고 비인증품목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단순실수로 ‘통고처분’을 받고 종결되었다.

본 사례는 한 개의 원산지신고서에 7개 품목을 삽입한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 슬로바키아세관에 의해서 실행된 원산지검증 사례로 비인증품목임에도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작성되어 원산지검증의 빌미를 제공한 사례이다.

(3)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번이 상이한 사례¹⁸⁾

H사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미국, EU 등 국내외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FTA 활용능력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를 획득하였고 수출제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완제의약품(HS 3003.90)으로 유권해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산지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된 담당자는 기존대로 품목번호 3003.90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HS 2934.99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미국의 관세당국(CBP)은 수입신고 일로부터 3개월 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였다. 2015년 3월 6일 검증요청을 받은 수입자는 2주의 시간이 경과되고서야 수출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소명자료의 회신기한까지 15일 밖에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원산지검증을 위해서 회신기한이 촉박하므로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에 있는 검증요원의 E-mail로 회신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수입자로부터 수신한 메일을 첨부하여 통보가 지연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2주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리고 H사의 담당자는 기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수출국 세번과 CBP Form 28, 미국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이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수입국 세번으로 소명자료를 작성해야 하므로 기존 업체가 관리하던 자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수입국 세번으로 BOM, 최종 완제품설명서 등 원산지관련 서류의 내용을 다시 작성하고 수정하여 소명자료를 완성하여 수

18)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2015, pp.114-125

입자를 통해 CBP에 제출하였다.

본 사례에서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출신고의 세번을 다르게 처리함에 따라서 서류상의 일관성에 합리적 의심을 가진 미국세관이 원산지검증을 실행한 사례이다.

2)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내용의 정확성 등 실질적 요건에 의한 원산지검증 사례

(1) 원산지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한 충족 여부 의심 사례¹⁹⁾

Y사는 PCB전문업체로 가정용 전자제품에 장착되는 PCB ASSY를 생산하여 폴란드로 수출하였다. 동사는 한·EU FTA를 활용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 1년 만에 원산지검증을 받게 되어 해당물품의 한국산 여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및 관련규정에 대한 충족여부, 해당물품의 품목번호 등에 대해 검증을 받게 되었다.

검증 과정에서 첫째 PCB업계 관행에 따라 특혜 세번인 8537.10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당시(2011) 정확한 품목분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품목분류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당시의 담당자가 퇴사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수출품 중 한 품목(6871JB2084M)을 PCB로 분류하여 PWB ASSY DISPLAY로 정했고 수입업체도 해당물품을 PCB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램프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해당 품목이 조명기구(HS 9405.40)로 분류됨을 확인하였다. 결국 쟁점물품이 PCB가 아닌 Lamp로 재분류된 세번으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에도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원산지조작에 대한 수출업체의 고의성이 없음을 폴란드세관에 소명하고 폴란드의 구매자도 수정신고를 완료한 후 원산지조사가 종결되었다.

본 사례는 원산지증명의 진위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 사례이지만 검증과정에서 일반적 관행에 의한 품목분류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통해 원산지검증을 완료한 사례이다. FTA에서 품목분류는 원산지판정의 근본이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품목분류 지식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이다. 원산지증명은 세번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품목분류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19) 관세청, 「2014 FTA 생생스토리」, 2015, pp.168-173

(2) 특정 인보이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사례²⁰⁾

J사는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8458.91)을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협정세율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관세당국(CBP)은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인으로 기재된 수입자에게 특정 인보이스 건에 대한 CBP Form 28(정보제공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BOM, 가격자료, 생산 및 제조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DDP조건에서 수입통관에 책임이 없는 수입자는 검증관련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수입자는 1차 검증에 따른 회신기한 30일을 포함하여 2차 예비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에 수출자에게 통보하였다. 수출자는 1차 검증 시 연장신청을 했다면 보통 20일 이내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수입자의 통보가 없어 연장신청도 할 수 없었고 예비결정문에 따른 20일의 보완기간 중 2주가 경과하였으므로 6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CBP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J사는 첫째 제조공정도와 BOM은 사내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BOM의 원재료에 대해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수출제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 55% 이상의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합기준이다. 둘째 수출제품(선반)의 부품 개수가 200여개이고 종류가 다양하였기에 조립된 원재료나 반제품 등의 원재료는 재질, 용도 등의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J사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CBP에 제출할 수 없었다. 미 관세당국은 20일의 보완기간 내 원산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혜택 받은 관세를 추징한다는 최종결정문을 통보하였다.

본 사례는 특정 인보이스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되었으나 원산지검증에 대응한 서류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원산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으며, DDP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자와 원산지검증에 대한 사전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원산지검증에 실패한 사례이다.

(3)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보관상태 의심 사례²¹⁾

G사는 Copper Rod 등 독일 수출 건에 대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증빙서류 보관상태 등에 대한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 검증대상 품목은 Coreless Brass Tube, Coreless Copper Tube, Copper Tube 등 세 품목이며, G사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외거래처에 직수출

20)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2015, pp.131-137

21) 관세청, 상계자료, pp.159-167

하는 무역회사지만 완제품을 제조하는 납품회사인 A사의 협조로 당해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상태이며, A사 또한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은 상태였다. 검증 대상 품목은 총 10개 업체를 거쳐 최종 수출자에게 납품되어 수출되고 있었고 총 70여 가지의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아이টে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조사대상 품목의 수로 인해 영세 중소기업의 조사 대응에 어려움이 컸다. 제품의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원산지기준 중에서 일반기준인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을 점검하였다. 검증과정에서 첫째 잘못 작성된 원산지확인서가 유통되고 있음이 발견되었고, 특히 중간 영세 대리점의 경우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를 토대로 변동 없이 원산지확인서를 작성, 인도해야 하지만 공급하는 자로부터는 한·EU FTA 역내산 불충족 원산지확인서였음에도 원산지확인서를 충족으로 작성하여 납품처에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최종 수출 완제품에 대한 역내산 원산지 충족을 위한 전체적인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품목분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부족도 문제였다. 품목분류가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대상품목이 관, 봉, 프로파일 중 어느 세번으로 불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자료가 부족했다. 셋째, 대상품목은 한·EU FTA에서 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수입원재료가 세번변경 뿐 아니라 부가가치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므로 반제품 제조사와 완제품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했고, 세금 계산서 등과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년 전에 수출한 아이টে에 대한 검증이었으므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할 때 수출일(2012. 1. 27) 이후의 자료를 준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준비할 때 업체, 규격 등을 포함한 물품명, 금액 뿐 아니라 날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검증 대응기간이 무려 4개월 가까이 진행되었다. 본 건은 협력사가 많아 서로간의 협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물품 제조사들이 평소 원산지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여러 착오를 거친 후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사후적인 대응은 원산지가 역외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만 급급하여 원산지관리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검증에 따른 위험이 증대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전부터 원산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다.

3) 검증이행 절차적 요건에 의한 원산지검증 사례

(1) 선적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의한 원산지검증 사례²²⁾

유기화합물을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국내수출업자 I사는 수출신고 후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아세안세관에 제출하여 MFN 관세율 5%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0%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선적 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것을 발견한 아세안세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으로 원산지검증을 한국세관에 요청하였다. 한국세관의 원산지검증결과 I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코드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원재료의 품목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여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잘못 발급하였다. 결국 수출품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본 사례는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선적 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히 선적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절차적인 요건을 단서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사례이다.

(2)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으로 검증받은 사례²³⁾

A사는 주로 TV모니터의 측면커버 사이드프레임(Cover Side Frame), 지지대를 수출하는 업체로 주요 수출국가는 슬로바키아로 대EU 수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고 있었으며, 협정관세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 지연으로 슬로바키아 통관 후에 FTA협정관세를 사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슬로바키아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요청받게 되었다.

원산지증명서는 사전발급이 원칙적이며 예외적으로 사후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제도는 물품의 생산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출 이후 일정 기간 내 작성하여 발급하는 제도로 소급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미 제조, 수출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원산지소명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s)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타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의 경우 합리적 의심으로 원산지검증을 받는 사례가 많아서 유의해야 한다.

22)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대한상의 원산지검증 실무 연수자료, 2016. 9. 26.

23) 관세청, 「FTA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모델」, pp.8-11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3) 수출자 보관용 원산지증명서 보관의무 위반 사례²⁴⁾

L사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수입통관 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출자보관용 부분을 모두 요청하여 수출자보관용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 협정에 의한 원산지검증을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제3부분(수출자보관용)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인도네시아 세관은 2015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12년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123건에 대한 관세를 모두 추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L사는 세관에 재발급을 확인하니 서류가 분실, 도난, 훼손 사유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본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확인을 받았다. 우리 세관당국의 지원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관은 서류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부과가능성을 피력하였다. 이번 건은 우리나라 세관당국이 개입하여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L사의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FTA 사후검증 관련 추징 및 벌금부과 없이 종결되었다.

이번 사례는 수출자는 FTA 특례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례이다.

IV. 원산지관리전략에 대한 시사점

원산지검증의 실패는 수입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여 일차적으로 수입자의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한 수입자의 금전적 손해는 거래단절로 연결되어 수출자의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출자는 적극적으로 원산지검증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원산지검증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기업들은 원산지검증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수출기업 자체도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역량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²⁵⁾ 있고 앞에서 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원산지검증을 대비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4) 관세청, 「꼭 알려주고 싶은 통관애로 해소 사례 100」, 2015, p56

25) 박지은, “FTA 원산지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TRADE FOCUS」제9호, 2016, p.8-11

1) 원산지관리전략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검증은 형식적 요건의 미비에서 출발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인 요건 불충족에 의한 원산지검증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신고에만 집중하여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3장의 사례 외에도 EU와의 거래에서 상업서류가 아닌 별도 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수출자 번호 작성란에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거나, 서명권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하는 등 다양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는 실질적 요건에 대한 검증으로 연결되어 협정관세 특혜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EU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검증요청이 많은데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 및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오류에 기인한 검증요청이 다수를 차지한다.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식으로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지만 형식에 맞지 않거나 제3자가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원산지검증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하였다.

한·아세안 FTA 검증의 경우도 형식적 요건 위반사유로 특혜관세 배제를 통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상의 서명, 인장 등 형식적 요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요청도 있으므로 원산지기준 표기나 HS품목 번호 상이, 중량 또는 금액 등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²⁶⁾

개도국에서는 사후 검증을 하지 않고 통관단계에서 검증하기 때문에 여전히 원산지증명서 형식 및 절차관련 특혜원산지 위반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협정요건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원산지기준 위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FTA 이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 특혜관세 배제가 협정요건 위반(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서 실질적 위반(원산지기준 위반)으로 바뀌어 지고 있다. 선진국은 형식이 없는 자유로운 자율발급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기관발급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발급시점부터 절차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²⁷⁾

(2) 일반적 관행에 의한 원산지관리업무는 원산지검증을 초래

원산지검증 관련 업무에 있어 업무의 편의상 일반적인 관행에 의한 해석을 하는 경향을

26) 관세청,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I)」, 2015. p.43

27) 이명구, 「FTA 해외수출입통관 애로사례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제179호, 한국관세사회, 2016. p.62.

보였다. 개별기업이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관행적이라는 미명 아래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제3장에서 제시된 일반관행에 의한 품목분류 사례도 대표적 사례이다. PCB업계의 관행으로 특혜 세번을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품목별 인증수 출자 신청 때도 정확한 품목분류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에 원산지검증이 일어난 후에야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오류는 다양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에 대한 해석,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해석, 원산지검증 절차상의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해석은 원산지검증의 주체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 지원기관에 문의하여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원산지확인서 취급 소홀은 원산지검증의 실패 초래

원산지증명서를 제대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확인서의 발급과 관련 증빙의 보관이 필수적이지만 원산지확인서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원산지검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국내 거래단계에서 국내 공급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FTA 활용을 위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발급에 따른 혜택부재, 원가 및 제조공정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 원산지검증 과정에서의 소명에 대한 부담, 국내 공급자의 원천적 원산지관리 능력 부족, 발급을 위한 관리비용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국내 공급자들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강제화 되어 있지 않고 발급사실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 정확한 발급기업의 수나 유통 건수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다.²⁸⁾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부담해소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²⁹⁾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제도마저도 활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 제시되었던 사례와 같이 다양한 원자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협력업체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을 점검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한다.

28) 진병진,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p.111

29) 2013년 11월부터 서울세관에서 시범운영 후 2014년 2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세관 등 전국 6개 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이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세관장이 심사·확인하고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4) 원산지검증의 사후대응은 원산지검증의 실패 확률 높여

FTA 협정관세의 특혜 적용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HS코드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품목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첫째가 수출자와 수입자가 사전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단계에서 품목분류가 협의되어야 할 이유이다. 또한 수출업체에 귀책이 없더라도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3장의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을 수출한 경우도 DDP거래조건이므로 수입자가 미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받았음에도 1차 검증에 따른 회신기한 30일을 포함하여 2차 예비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에 수출자에게 통보하여 수출자가 원산지검증 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한 협력업체가 원산지증빙 관련서류 보관기간인 5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 체결 시에 원산지검증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하여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3장의 완제의약품 수출의 사례에서처럼 수입자의 일방적 요청에 의해서 원산지검증의 단서가 제공되었고 수입자가 검증요청을 받고 2주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수출자에게 통보함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2)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략

(1)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 원산지결정기준 표기 오류, 원산지증명서 형식오류 등 단순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형식적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원산지검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증빙서류 일체를 점검한 후에 수입자에게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점검 후에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울러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들어 관세청과 KTN에서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내 원산지관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한국무역협회가 3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검증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51.9%에 달했다³⁰⁾. 이와 같은 업계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외부 전문가나 지원기관을 활용해 원산지관리 업무의 일정부분을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할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원산지검증에 불충족 서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원산지검증은 FTA별로 상이한 점도 있고 원산지검증도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관행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장에서 제시한 사례 중 원산지검증에 성공한 사례의 대부분이 지원기관을 활용한 사례이며 이들 기업들은 원산지검증을 기회로 원산지관리를 위한 사내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외부 관세사를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지정하여 활용한다든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FTA활용센터, 관세청 및 각 세관,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상주하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협정이 가지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한다든가, 관세청의 원산지확인서발급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의 지원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고 기업에 비해 더 많은 검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도움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³¹⁾

(3)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FTA특혜 활용을 위해서는 특혜적용 물품의 원재료 수급단계부터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FTA 활용 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국내거래단계에서 원산지정보의 유통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발급, 유통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도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최종 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원산지검증의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에는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과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시스템 내지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확인서 관련, 관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가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과 원산지증빙 부담 제거로

30) 박지은, 전계서, p.11

31) 장근호, “FTA 특혜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제1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기업의 FTA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홍보부족과 기업들이 세무당국에 원가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³²⁾

(4) 계약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수립

FTA 협정관세의 특혜 적용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HS코드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결정기준, 양허관세적용 여부, 관세율 등이 HS코드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단계에서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HS코드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FTA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와 품목분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입자로 하여금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통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수출자는 합의된 HS코드에 따라서 원산지관리를 해야만 원산지검증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더구나 수입국은 수입신고서의 HS코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입자와 반드시 합의가 되어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검증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협조사항을 계약단계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 통보가 수입자에게 먼저 전달되므로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한 신속한 협력 채널을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5)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는 계속

수출과정에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완벽하게 오류 없이 작성되어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후에도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은 계속되어야 한다. 더구나 FTA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오류 사실을 해당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계약상대국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수정통보를 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례로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수정통보해야 한다.

32) 진병진, 전계서, p.113

VI. 결 론

EU, 미국, 중국 등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큰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원산지 검증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세계경기 회복의 둔화와 저성장 기조 하에서 각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확산시키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검증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검증의 최종 책임은 수출자에게로 귀결되며 원산지검증의 실패는 수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출자 거래선의 손실이므로 거래의 단절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원산지검증의 실패는 당해 건의 협정관세 특혜 철회 뿐 아니라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품목의 거래 건의 모든 수출에 적용되므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은 수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수출자의 경쟁력과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대부분이 FTA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원산지 입증서류를 확보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업체가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관리는 FTA를 활용하는 수출품의 원산지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원재료 구매, 제조공정, 부가가치 등을 조정하는 실제적인 요인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증빙자료의 보관 등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 9건을 분석하였으며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어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였다. 원산지검증 사례에서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에 대해 불충분한 경우 원산지검증이 실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으며,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의 미비로 인해서 실질적 요건을 검증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한·EU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합리적 의심에 의한 검증요청이 자주 발생하고 한·아세안 FTA도 형식적 요건 위반사유로 인한 원산지검증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개별기업이 원산지규정에 대해 일반 관행적인 해석을 하거나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해석, 검증 절차상의 해석 등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원산지검증 주체기관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확인서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산지검증에 실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적인 원산지확인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협력업체 관리도

중요하다. 그리고 원산지검증에 대한 위험회피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무역거래계약 체결 시에 거래품목의 HS코드 분류의 합의는 물론 원산지검증에 대한 책임소재를 설정함으로써 원산지 검증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수출 후에도 수정통보라는 제도 활용을 통해 끝까지 원산지검증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한 원산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이 논증되었다.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종합적인 원산지관리 전략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연구되어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창봉·임덕환,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의 관계연구”, 「관세학회지」제12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1.
- 김창봉·현화정,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및 원산지검증 수준과 원산지성과에 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 김희열·곽근재,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국제지역연구」제16권 제4호, 국제지역연구센터, 2012.
- 박홍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5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4.
- 박철구·최장우,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활용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제14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3.
- 송경은, “FTA 특혜무역활용통계를 통해 본 2015년 상반기 우리나라 FTA 수출이행현황”, 「FTA TRADE FOCUS」Vol.11, 국제원자재정보원, 2015.
- 윤준웅·이춘수, “FTA 원산지결정기준 위반의 유형별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제17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 이명구, “FTA 해외수출입통관 애로사례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제179호, 한국관세사회, 2016.
- 이명구·정재완·정재호, 「FTA의 이해와 활용」, 청람, 서울, 2016.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이지수,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 임목삼,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미 FTA 활용 섬유(편직물)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3.
- 장근호, “FTA 특혜원산지 검증제도 : 이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조세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 장근호·정재완, “한·EU FTA 원산지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판례의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3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2.
- 정재열, “FTA체제하에서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방안”, 「관세사」 제156권, 한국관세사회, 2010.
- 정재완, “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현황과 원산지관련 행정심판사례의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15.
- 정재우이길남,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원산지규정의 검토와 향후 논의 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7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 진병진, “FTA 원산지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6.
- 최양식·이병락,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에 관한 사례연구: 우리나라 수출입물품의 경우”, 「국제상학」 제30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5.
- 최준호, “한미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무역연구」 제10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4.
- 최창범,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검증 성과간의 관계”, 「무역학회지」 제40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5.
- 황남재·정재완, “원산지검증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기업의 내부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5.
- 관세청, 「2014 FTA 생생스토리」, 중소기업 FTA 성공사례집, 2014.
- 관세청,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I)」, 2015.
- 관세청, 「FTA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설명회자료, 2016.
- 관세청, 「FTA 꼭 알려주고 싶은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 2015.
-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5배 증가”, 2015. 12. 28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관련 구제제도 및 분쟁사례 수집분석」, 연구보고서 14-11-2, 2014.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체결상대국 원산지 동향분석」, 연구보고서 14-08, 2014.

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2015.

한국무역협회, 「FTA 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 2014.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http://www.fta.go.kr/main/situation/fta/term/>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

관세청 FTA PASS, <http://www.ftapass.or.kr>

Antoni, E. and Kati, S., “Rules of Origin in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Is All Well with the Spaghetti Bowl in the Americas?”, Journal of LACEA Economica, 00864, 2005.

Atsushi Tanaka, “World Trends in Preferential Origin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WCO Research Paper No. 20, World Customs Organization, 2011

Harris, J. & Staples, B. R., “Origin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disaster or trade facility opportunity?”,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Origin for Preparing the Origin Verification of Export Companies

Myong-Ryeol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FTA origin verification for exported goods in Korea and analyze the cases of major origin verification to seek origin management strategies that enables exporters to actively satisfy origin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ase analysis demonstrates that it is important to meet not only the substantive, but also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origin verification. We identified origin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develop internal origin management experts and origin management system, utilize external expertise and related support institutions, strengthen networking with supplier companies, consider origin management at the contract stage and continue origin management after export.

Key Words : Free Trade Agreement(FTA), Origin, Verification, Trade Compan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yonggi University